

* **상품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다단계판매원은 주문과 동시에 상품대금 전액을 현금,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에나직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지불해야 합니다.

*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직접수령: 상품대금의 입금확인 후 상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배달수령: 상품대금의 입금확인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통상 5일 이내에 주문 시 신청된 주소로 배달됩니다.

*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1. "회사"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 성분, 함량, 유통기한, 용법, 용량 기타 품질 표시 내용을 보증합니다.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법, 용량, 보관, 취급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판매원은 소비자보호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보호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회사가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가 발급된 구매계약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비자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상품구입 또는 사용한 소비자는 동 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상품 및 사업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지사항**

1. 상품 주문시 상품대금 외에 일체의 가입비를 받지 않습니다.

2. 우통장입금의 경우, 주문자와 동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카드매출의 청약철회는 7일 경과 후 카드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철회시 회사가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신청서, 상품구입신청서, 청약철회신청서, 신분증, 카드전표, 본인이 수령한 상품을 갖추어 신청하십시오

* **청약철회 등**

1. (소비자의 경우) 가.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4)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5) 다단계 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단계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17조 제2항)

3. 법 제16조,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청약철회, 계약해제 통보서 첨부.

* **청약철회의 효과**

1. (소비자의 경우)가.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나.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원이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 제 18 조 제 8 항)

다. "회사"는 소비자의 반포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 18 조 제 6 항)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개월 경과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 5%, 2개월경과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7%의 비용을 공제합니다. (법 제 18 조 제 1 항, 시행령 제 26 조)

*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초과하는 경우.

2. 다단계판매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한다.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교환**: 교환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페이먼트(할부)결제시 본인부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다단계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구매계약서에 판매원구매인자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합니다. 공제금지 한도가 다릅니다. - 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2.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지에서 제외됩니다.

3.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합니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지에서 제외됩니다. 5.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포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합니다. 6.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7.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학습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및 02-2058-0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ssa.or.kr)

청약 철회 • 계약 해제 통보서

수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명	주식회사 에나직크	연락처	02-546-812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5 희승빌딩 7층
발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사항	상품•서비스명		계약 연월일		계약서를 받은 날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		상품수량		계약금액
	이미 지급한 금액		계약경위 및 계약 사항		제품의 현재상태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사유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7조 및 제 2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함을 알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반품은 판매원 본인이 직접 방문처리 하여야 하며 대리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외규정은 회사 규정에 따름)

◆ 본 신청서는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였으며, 그밖의 계약조건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령과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